

WTO 加入에 따른 中國 外資導入法과 政策의 改編方向

김 부 찬* · 송 석 언** · 김 여 선***

목 차

- | | |
|------------------------|-----------------|
| I. 序 言 | 2. 中國企業의 發行株式 |
| II. 外資導入政策과 現況 | 3. 株式讓渡와 M&A |
| 1. 外資導入政策 | 4. 關聯制度의 改善 |
| 2. 外資導入現況과 特徵 | V. 서비스市場 開放의 擴大 |
| III. 投資企業制度和 改編 | 1. 銀行業 |
| 1. 三資企業制度 | 2. 保險業 |
| 2. 外商投資株式會社와 直接資本調達 | 3. 證券業 |
| 3. 投資企業法과 會社法 | 4. 通信 서비스 |
| IV. 株式讓渡와 國境間 M&A의 개방 | 5. 流通業 開放 |
| 1. 序說 | 참고문헌 |

I. 序 言

중국의 개방 정책은 부족한 자본의 조성과 고용창출 문제를 적극적인 외자도입과 대외무역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방이후 20여 년간의 성공적인 외자도입 정책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 중심의 중화경제권이라는 세계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한한 잠재력과 더불어 20여 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으로 매우 주목받는 경제국가로 성장한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 국가들의 적절한 견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WTO 중심의 국제경제질서 속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신속히 GATT/WTO에 가입하는 것만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고, 증가하고 있는 통상마찰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1986년부터 GATT/WTO 가입을 위하여 15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중국의 가입협상은 WTO사무국과 개별회원국으로 나누어 2원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WTO 가입협상을 쌍무적인 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여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또한 중국과 끊임없는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WTO 가입 협상과 연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많은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차별적인 무역관행도 해소시켜 왔다. 중국은 1999년 말 미국과 그리고 2000년 5월에는 EU와 양자간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이제 가입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였으며, 현재는 WTO 사무국과 가입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소장

** 제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영남대학교 강사,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역규모나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 등 많은 무역장벽을 제거할 것이며 또한 금융 서비스 분야에 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할 것이므로 무역과 투자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교역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WTO로 대변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 중의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외자 도입국이므로, WTO 가입과 동시에 정비되어야 할 중국 투자관련제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의 대중 직접투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고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변화할 외자도입정책과 제도에 관하여 중·미간에 체결된 「시장진입에 관한 협정」(US-CHINA BILATERAL MARKET ACCESS AGREEMENT)에 근거하여 고찰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外資導入政策과 現況

1. 外資導入政策

중국의 개방 정책이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국내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입은 중국내 자본형성은 물론 기술이나 경영기법도 동시에 이전하여 중국의 수출경쟁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하여 과거 계획경제 요소에 따른 불합리한 국내경제에 있어서 야기되는 구조조정 효과에 있다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중국내 기업의 경쟁을 촉진시켰으며, 이에 따라 독점적 지위의 국유 기업들은 시장점유 유지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개선을 꾀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은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초기에 외자도입에 관하여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투자사항을 정부가 심의·허가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연관 있는 노동밀집형 항목이 주를 이루었다. 그 후 1995년 「외국인투자에 기본방향에 대한 임시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을 발표하여 체계적인 외자도입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세부적으로 「투자업종리스트」(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를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금지·제한·장려·허가 등의 4가지 규제체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외자도입은 체계는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list)으로서 많은 진입장벽과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지되는 분야로는 국가의 안전에 관한 업종, 환경과 국민 건강에 관련된 업종 그리고 국가가 금지를 예정하고 있는 기타 업종 등이 있다.¹⁾ 투자제한에 해당되는 분야는 ① 국내에서 이미 생산, 개발하였거나 선진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능력이 국내시장을 충족하고 있는 업종, ② 경쟁력이 없고 수출이 불가능한

1) 구체적으로 이에 포함되는 주요 업종으로는 송전망 건설과 경영, 우편·전기통신업무의 경영관리, 선물무역, 방송국, 프로그램제작, 영화, 비디오 상영 등을 들 수 있다.

업종, ③ 선진적 기술의 제공 없이 이익만 추구하고 스스로 외환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업종, ④ 조립생산라인을 도입하고 부품을 수입하여 완성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단순히 국내에 가격차로 이익을 거두는 업종, ⑤ 중국의 전통공예, 미술품, 특산품, 전통적 수출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업종, ⑥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기타 업종 등이다. 제한업종 중에서도 심사기준, 타당성 검토, 등록보고, 보호정도에 따라 이를 甲과 乙로 분류하며 乙이 더 제한적이다.²⁾

중국의 WTO 가입이 완료되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상당부분 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개방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정부의 허가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던 금융업의 중국내 상업적 주체에 대하여 대폭적인 허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도매 유통업에 대한 지역적 제한의 확대, 외자의 무역업에 대한 범위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항공업종과 같은 첨단 기간산업 등에 대하여도 일부 제한적인 허용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그 개방의 속도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투자 위주의 외자도입도 BOT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³⁾

2. 外資導入現況과 特徵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 중 24.8%가 외자에 의한 투자이며 수출 총액 중 투자기업에 의한 수출비중이 28.7%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비중은 더욱 더 높아질 소지가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투자 誘引國으로 지금까지 약 2,800억불의 외자도입이 이루어졌으며, 25만개의 투자기업이 설립되어 1,9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그 수출액도 전체 수출액의 46%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⁴⁾

중국의 외자도입 현황을 보면 첫째, 직접투자에 의한 외자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간접적인 외자도입은 국제증권시장에서의 중국기업의 주식상장,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외자주의 발행과 외국의 투자기금의 활용⁵⁾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외자도입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중 단연 직접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대중 직접투자는 중국내에 합자, 합작 그리고 독자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외자도입 초기에는 시장 진입 특성상 합자가 가장 많았는데, 현재는 독자 기업 설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홍콩과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화교 자본의 투자가 80%이상을 점하고 있다. 중국 내륙에 대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행한 국가는 홍콩이며, 이는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의 화교들이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규모 노동집약적 투자에서 대규모 기술집약적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중국의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는 단순한 가공 조립형태의 투자에서 최근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형 대형 프로젝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투자액은

2) 甲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가정용 전기기구(세탁기, 냉장고 등) (甲), 250만톤 이하의 정유공장 (甲), 보통 여객선 제조 및 선박용 디젤기관(甲), 라디오, 녹음기, 흑백TV(甲), 연산 30만톤 이하의 시멘트 생산설비(甲)등이 있다. 乙류에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모방직, 면방직, 화학섬유 및 화학섬유 원료, 에어컨, 컬러 TV 및 튜너, 원격조정기, 컬러브라운관, 비디오, 대외무역업 등이 있다.

3)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중국민항총국의 비준을 거쳐 해남성 항공공사와 미국항공공사가 합자항공공사를 설립했다. 동회사는 해남성뿐만 아니라 여타지역에서도 항공운수, 항공수리 및 서비스, 항공여행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4) 『人民日報』(2000. 6. 22), p. 11.

5) 이는 현재 長江三峽浬基金, 上海浦東開發基金, 新技術開發基金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많지 않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연안 경제특구 중심의 외자유치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전국적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는 그 동안의 투자인센티브보다 더 폭넓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중국 전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Ⅲ. 投資企業制度와 改編

1. 三資企業制度

1) 삼자기업의 의의

중국은 개방 초기 외자도입을 위하여 「합자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합작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및 「외자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 등 소위 삼자기업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삼자기업법에서 규정하는 형식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투자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中外合資經營企業(이하: “합자기업” equity joint venture이라 함)이란 중국의 파트너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투자기업이다. 중국 투자자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만이 될 수 있으며 자연인은 파트너가 될 수 없다. 각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지분에 해당되는 登記資本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 때는 반드시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자자는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權利와 義務를 부담하게 된다. 출자자 자본은 합자기업의 獨立財產으로 경영과 채무의 책임근거인 財產이 되며, 출자금액의 限度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有限責任의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합자기업은 출자를 주식으로 나누어 구성하지 않고 일정한 比率로 구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中外合作經營企業(이하: “합작기업” contractual joint venture이라 함)은 출자비율에 따라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손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合資企業과는 달리 합작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즉 투자와 합작조건, 수익 또는 상품의 분배, 위험과 손익의 분담, 경영관리의 방식 및 기업 종료 시 재산의 귀속관계 등을 雙方의 契約에 의하여 決定한다. 또한 출자자들은 법인격 취득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자기업보다 편리한 점은 있으나, 현재 합작투자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外資企業은 合資企業이나 合作企業이 중국자본과 合資에 의하여 설립되는 데 반하여, 자본 全額을 외국투자자가 出資한 기업이며 原則적으로 有限責任을 진다.

2) 투자기업법과 WTO/TRIMS

(1) 수출의무와 현지부품조달의무

중국은 삼자기업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에 위배되는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WTO 가입과 동시에 가장 먼저 개편이 이루어져 할 분야가 삼자기업법이라 할 수 있다. 삼자기업법은 TRIMS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행요구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수출입 평형요구, 현지부품조달 그리고 외환수지평

형의무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2000년 10월 WTO 사무국과 가입 실무 협상 진행 중 TRIMS(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⁶⁾ 관련법을 개정의 특징은 외자기업에 부과하던 생산품의 수출의무와 외환평형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생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다.

輸出義務履行과 관련하여 기존의 “외자기업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 경제발전에 부합해야 하며 또 한 선진기술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생산제품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수출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외자기업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 경제발전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는 수출주도형 혹은 기술집약형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⁷⁾라고 개정하여 輸出義務 조항을 장려 성격의 조항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現地調達義務(local content)는 관련조항 후반부의 “동등 조건하에서 중국산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반부를 “외자기업은 비준 받은 경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및 연료 등을 공평·합리의 원칙에서 국내시장 혹은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내 또는 외국에서 구입할 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2) 외환통제와 외환수지 평형의무

중국은 엄격한 외환 통제를 가하고 있어 투자기업의 대외무역이나 과실송금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1994년부터 외환관리 부분에 개혁을 진행하여, 1996년 銀行間 外換市場을 형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환지정은행을 통해 외환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상거래에 소요되는 외화 확보를 위해 투자기업들은 과거 외환조절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중국기업과 같이 외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외환관리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상품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꾸준한 외화유입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 증가율이 답보상태에 있고 외환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國家外換管理局이 취하고 있는 외환통제의 주요내용은⁸⁾ 첫째, 기업의 外貨負債의 기한 전 상환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이 외화부채의 환리스크 회피를 위하여 중국내 은행에 人民幣 융자를 받고 이를 다시 외화로 환전하여 기한 전에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차관도입 계약서에 명백히 조기상환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며, 이것도 국가외환관리국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외화송금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10만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에 대하여는 기업이 은행에 제출한 통관서류는 세관(海關)에서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관의 확인절차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조치는 무역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 소재지 이외의 은행을 경유한 외화송금도 금지된다.⁹⁾ 이는 투자기업 본국 은행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자 은행의 보증에 의한 人民幣 융자가 제한을 받으며, 외자은행의 신용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중국주석령(令)」 제 40 및 41호.

7) 「외자기업법」 제3조 1항.

8) 최근의 외환 통제에 관하여서는 國家外匯管理局에서 발표한 「進口付匯核銷貿易真實性審核規定」((98)匯國函字第199號)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9) 「銀行外匯業務管理規定」 제32조.

투자기업에 대한 외환 통제가 강화되는 데 반하여 이번 삼자기업법 개정에서는 외환수지 평형의무를 삭제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외자기업법 제18조의 “외자기업은 외환수지평형을 자체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제품은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중국역내에서 판매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외환수지평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중국시장판매를 비준한 기관이 해결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외환수지 평형의무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합작기업법 제20조의 “합작기업은 외환수지 평형을 자체 해결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외환수지 평형을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역시 삭제하였다.

3) 삼자기업법과 기타 투자규제

삼자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투자규제를 보면, 외국인의 출자 비율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과 출자 비율에 상관없이 중국 측 공동 사업자가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 또한 국제투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투자의 선행회수에 관하여서도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에 대하여 총 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 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작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작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등록자본의 25%이상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⁰⁾

대표이사(董事長)는 기업의 法定代表이므로 투자 각방 중 어느 쪽에서 대표이사를 담당하는가에 따라 경영권의 향배가 결정된다. 초기에는 중국 측 사업자가 대표이사가 되도록 하였으나, 1990년 개정된 법에서는 대표이사와 부대표이사는 各方의 協議나 이사회(董事會)의 選出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합자투자자 一方이 대표이사를 맡으면 반드시 다른 일방이 부대표이사를 맡도록 하여 중국 측 사업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으며, 합작기업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¹¹⁾

삼자기업법은 투자기업의 사업기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선행 回收란 기업의 경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업의 이윤에서 외국투자자의 投資分을 먼저 반환하여 주는 것이다. 합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의 선행회수를 인정하지 않고 合作企業의 경우에는 합작계약에서 외국투자자의 투자의 선행회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작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²⁾

2. 外商投資株式會社와 直接資本調達

대중 투자의 방법은 삼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삼자기업법은 주식회사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기 설립된 삼자기업도 조직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외상투자주식회사는 省의 관련 부처 및 외경무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의 비준을 얻어 설립되고 쌍방 주주가 주식을 공동으로 소지하되, 외국주주가 소지한 주식은 회사등록자본의 25%이상이어야 하고 등록자본이 최저 인민폐 3000만원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기

10)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4조.

11)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35조;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12조.

12) 余勁松, 『國際投資法』(法律出版社, 1997), p. 177.

설립된 삼자기업은 최근 3년간의 연속 흑자기록이 있으면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다.¹³⁾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이러한 기업 형식으로 신규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금융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과 중국 회사법상의 주식회사 규정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직접금융을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외상투자주식회사 중 약 2%정도만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기업의 주식시장의 상장이 주로 국유대형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법률의 요건에 따라 상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상장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법률에는 외상투자주식회사의 상장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증권거래소도 주관증권사 추천제도를 실시하고 앞으로 개장될 CHASDAQ은 주간사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상장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¹⁴⁾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 후 외상 투자기업에 대하여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별 규제 없이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중 투자기업의 직접자본 조달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3. 投資企業法과 會社法

1) 삼자기업법의 통일

삼자기업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WTO 가입 후 기업형태, 설립, 자본금의 투입 등에 대하여 외국기업 및 내자기업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삼자기업법과 회사법 사이에 많은 법률적 충돌이 있고 또한 삼자기업법 간에도 서로 중복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기존의 삼자기업법을 합병하여 통일적인 외자기업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주로 외국투자자의 투자 분야, 외국투자의 심사, 인가, 외자 대우, 외자보호, 분쟁의 해결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외자기업의 형태, 내부 조직기구, 설립, 출자, 경영관리 등에 관한 것은 중국 회사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2) 삼자기업법과 회사법

삼자기업법의 법률적 미비에 관한 사항은 중국 회사법(公司法)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어서 삼자기업법과 회사법은 서로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삼자기업법이 회사법보다 제정시기가 이른 관계로 인하여 양자의 상충되는 규정이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회사법과 투자기업법과의 법률적 충돌이 일어나는 분야는 주로 회사조직 형태인 유한회사에 관한 제 규정들로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자본충실의무와 관련하여 내자기업 경우

13) 「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對外貿易經濟合作部, 1995), 제15조

14) 劉國光, 『2001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豫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pp. 151~159.

15)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編纂委, 『1999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經濟科學出版社, 1999), pp. 233~239

등록자본금은 설립 시에 전액 납입하여야 하는 데 반하여 외자기업은 설립 후 일정기간 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토록 돼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유령회사' 현상과 투자일방의 출자거부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회사법상의 유한회사는 당연히 감자가 가능하지만(회사법 제 186조), 외자기업은 감자할 수 없다(합자기업법 실시조례 제 22조 등). 둘째, 회사법상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원의 공동출자로서 설립이 되며 운영기구로 사원총회와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모나 사원의 수가 적으면 이사회는 구성하지 않고 단지 1명의 집행이사만 두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의 운영기구는 사원총회이다. 그러나 삼자기업법은 사원총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은 운영기구로 이사회나 연합관리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의 이사도 출자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합작기업의 이윤분배 방식은 출자한 지분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것과는 달리 약정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 투자자는 합작 기한 만료 후 무상으로 투자자본을 중국투자자에 양도하여야 하므로 만기 전에 투자본을 회수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상 합작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조세를 편법적으로 운용하거나 감가상각을 신속히 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어 투자 쌍방간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¹⁶⁾

IV. 株式讓渡와 國境間 M&A의 개방

1. 序說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매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 동안 외국 투자자는 중국내에서 삼자기업을 설립하는 직접투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WTO 가입을 계기로 투자관련 제도의 개편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M&A 시장도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M&A는 기 진출 외상독자기업이 중국기업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는 자산매수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피매수 기업이 원매수 기업인 외상독자기업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기업을 지배하거나 매수하는 형태가 있다. 중국은 외국 투자자에게 중국기업과 합자로 중국 내 투자활동을 주 영업범위로 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양수를 통한 상장기업에 대한 M&A 방법이 있다.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는 위의 「외국투자자한업지도목록」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종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산업 정책적 필요에 따라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에까지 외국투자자의 M&A를 허용하고 있고, 이는 삼자기업을 설립하는 것보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中國企業의 發行株式

중국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발행시장과 투자자를 기준으로 정

16) 田冰川, 『典型涉外經濟案例』(法律出版社, 1999) 참조.

해진다.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발행하여 거래되는 보통주식인 'A주식'과 중국 내에서 발행하고 상장되지만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B주식'이 있다. 그리고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H주식'이 있는데, 이는 Hong Kong의 첫 자인 H를 지칭한 것이다. H주식과 B주식간의 공통점은 외자주식으로 인민폐로 발행되지만 외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단지 해외투자자만이 거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 외에도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발행한 국유주와 법인주라는 독특한 형태의 주식이 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은 A주식과 B주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주는 첫째, 투자자가 해외 투자자이다. B주의 발행목적은 외자 유치인데, 따라서 투자자는 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법인과 일반인, 그리고 자국 증권주관기관이 특별히 허가한 기타 해외법인과 자연인이 된다. 둘째, 인민폐로 액면가를 표시하고 외화로 거래를 한다. B주의 거래 및 순익은 일률적으로 인민폐로 가격이 매겨지고 결산은 외화로 한다. 환율은 청산시의 외화시장가격으로 환산된다. 셋째, B주는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식증권이다. 주권 양도 시는 배서제도와 양도증서제도를 채택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회사 주주 명부에 주주의 성명을 변경하며 주권의 이전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B주의 주식배당금, 순이익, 거래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납세 이후 해외로의 자유이동이 허락된다.¹⁷⁾

3. 株式讓渡와 M&A

1) 사모발행과 투자기업으로 전환

B주식은 소수로 발행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취약한 중국기업들은 일부 해외 기관투자자나 대형기금이 이를 전량 매수하게 하는 사모발행을 하고 있어 기업의 인수합병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B주를 발행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은 첫째,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 회사가 발행할 총 발행 주식의 35%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둘째, 발기인의 출자 총액이 1.5억 인민폐이상이고, 공모주가 회사 총 발행 주식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셋째, 발행할 B주식 총액은 4억 인민폐이상이고 공모는 15% 이상이어야 하며, 넷째, 국유기업이나 다른 종류의 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회사는 발행 전 3년 연속 흑자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¹⁸⁾

즉 B주를 전체발행주식의 25%이상 발행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면 합자기업으로 전환이 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회사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B주로 외국 자본에 사모발행하여 인수하게 하면 이 회사는 합자기업으로 조직이 변경된다. 해외투자자의 B주 보유 수에 대하여 5% 룰을 채택하고 있는데, 만일 투자자의 한 회사의 B주 보유 주식수가 이 회사 주식 총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회사와 증권거래소 그리고 증권감독위원회에 3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기업매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투자 지주 회사와 B주식의 매집

외자의 지속적인 도입을 위하여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17) 「關於股份有限公司境內上市外資股的規定」(1995. 12. 25.) 第 3. 4條.

18) 위 규정 제 8조.

허용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의 지주회사 설립조건을 보면 첫째, 설립 신청 1년 전의 자산총액이 4억불 이상이어야 하고, 이미 중국내 출자액 1천만불 이상의 투자기업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3개 이상 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투자자가 10개 이상의 생산 혹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기업이어야 하며 투자액은 3천만 불이 넘어야 한다. 셋째, 중국 측과 합자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국측의 자산총액이 1억 인민폐 이상이 되어야 한다.¹⁹⁾

지주회사는 투자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나 생산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직접투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기업을 매수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증권시장에서 외국 투자 지주회사가 인민폐 특종 주식(B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지배하는 등 많은 지주회사들이 현재 B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투자 지주회사의 B주 매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

3) 법인주와 국유주의 양도

1990년대 초 중국 국유기업 개혁 당시 국가경제체제위원회는 「주식제기업 시범 실시법」(股份制企業試點辦法)을 발표하여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 변경을 허용하였다. 조직 변경을 할 때 소유권의 처리는 국유 주식, 법인주식 그리고 개인주식 그리고 외자주식으로 구분되어 처리되었다.

국가주식은 과거 국유기업이 주식회사로 회사형태를 변경할 때 국가의 자산을 기명식주권으로 전환하여 국가에 양도한 주식으로 정부 참여 지분을 말하며, 법인주는 국유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출자하여 주권으로 전환한 주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의 직상장은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법인주 거래시스템(STAQ)²⁰⁾을 통하여 국유기업 간에만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한 대부분 국유기업의 일반적인 소유권 구조를 보면 국유주와 법인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반 공모주가 극소수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유기업이 보유한 국유주나 법인주를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국경간 M&A가 되는 형태이다. 현재 대형 국유기업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외국자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주식과 법인주식의 유통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국가주식과 법인주식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중국정부의 국유자산관리국이나 체제개혁위원회 그리고 각 지방 증권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거쳐서 실시되기 때문이다.²¹⁾

4. 關聯制度的改善

1) 증권법

증권관련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회사법과 증권법이 있다. 중국 증권법은 국유기업이 중국 기업의 대다

19) 「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1995) 제2조.

20) 법인주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장외거래 시스템으로 STAQ(Security Trading Automated Quotation)가 있다.

21) 劉李勝, 「外資併購國有企業」(中國經濟出版社, 1997), p. 327.

수를 차지하고 또한 공유제에 따른 정치체제와도 연관이 있어 비교적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법은 중국의 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다.

첫째, 증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중국 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주식, 사채 및 국무원이 인정하는 기타 채권만을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채, 상업어음, 국채, 해외에서 발행된 국채 및 기타채권 등은 모두 관련 부서의 법규로 규제하는 형태이다. 둘째, 신용거래와 선물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 선물 시장에서 발생된 투기화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시장질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셋째, 증권회사를 종합증권회사와 중개증권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증권회사의 자본금은 5억 元 이상이며, 중개증권회사는 5,000만 元 이상이다. 그 외에도 M&A와 관련된 이해 당사간의 거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²²⁾

2) A·B 주식의 합병

B주식의 투자자는 외국의 투자자금이 대부분이며 또한 외국의 특정 자본에 사모발행을 하는 것이므로 시장 유통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중국기업의 회계제도 등 공시제도의 미비 그리고 과도한 비용 등이 B주식 시장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라 할 것이다. 중국기업에 매력을 갖고 있는 외국투자자는 중국 우량기업이 홍콩에 상장하고 있는 H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기업임에도 불구하고 A주보다 B주에 대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B주의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다. B주식과 A주식으로 나누어 발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시장보호를 위한 자본수지 항목에 대한 미개방과 외국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에 있다. 하지만 결국 A주와 B주의 구분이 오히려 중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중국 정부는 A주와 B주의 통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²³⁾

3) 국유주 유통 허용

현재 중국 주식 유통시장에 있어 문제점은 발행주식수에 비해 유통주식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데 있다. 국유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더라도 국유주와 법인주는 유통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유주와 법인주의 거래 제한은 결국 중국의 체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국유 기업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하여 국유주를 유통시켜 민영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주와 국유주의 유통은 결국 외국자본에 대해 새로운 대중 투자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²⁴⁾

22) 葉林, 『中國證券法』(中國審計出版社, 1999), p. 336

23) 상계서 p. 63 : 鄧宏, “中國A股和B股市場應該合併”, 『中國期貨』(1997. 5), p. 43 : 南方證券有限公司B股課題組, “B股市場發展的時間邊界”, 『中國期貨』(1997. 9), p. 31.

24) 吳浜, “我國證券立法的若干重大問題分析”, 『中外法學』(北京大學, 1997. 4) pp. 62~69.

V. 서비스市場 開放의 擴大

1. 銀行業

1) 외자은행의 설립요건과 상업적 주제 현황

개방이후 중국은 외자 도입을 위하여 5개 경제특구에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北京에는 사무소 설립을 각각 승인하였다. 금융기관의 설립승인을 점차 확대하여 1999년 9월 현재 중국에는 외국은행의 지점 155개, 합자은행 7개, 외국독자은행 6개 그리고 외국은행 대표처 248개 등이 상업적 주제를 하고 있다.²⁵⁾

외국자본의 중국내 상업적 주제는 외자은행과 외국은행이 중국내에 설치한 지점과 외국 금융기관과 중국 금융기관이 합자하여 설립한 합資은행이 있다. 그러나 외자 금융기관 설치 지역은 국무원이 정하는데 일국 1지역 1사에 한하고 있다. 외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자본금은 3억元に 해당하는 국제통화로 하고, 납입자본은 수권자본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본점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1억元 이상에 해당하는 국제통화를 운영자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외자은행의 설립요건은 신청자가 금융기관일 것, 중국 국내에 대표기관을 설립한 후 2년을 경과할 것, 설립 신청 전년도말 자산총액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일 것 그리고 신청자의 소재지국이 건전한 금융감독제도를 보유할 것 등이 있다. 외국은행 지점의 설립요건은 중국 국내에 대표기관을 설립한 후 2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설립신청 전년도말 자산총액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자은행의 설립요건은 합자당사자가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외국 합자당사자가 중국 국내에 대표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며, 외국 합자당사자의 설립 신청 전년도말 자산총액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²⁶⁾ 외국은행들은 예금·대출·어음할인·송금·보증·수출입결제 및 승인을 취득한 외환투자, 외국인·삼자기업 및 국유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다.

2)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중국은 외자금융기관의 중국에서의 인민폐 업무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인민폐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상해와 심천으로 199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여 수출입 등 경상거래와 관련된 외환매매를 허용하고, 이듬해인 1997년 1월에는 上海浦東에 설립되어 있는 은행에 대하여 인민폐 예금, 대출 업무를 실험적으로 허용하였다.²⁷⁾

상해에서는 1996년부터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외자은행에 대하여 상해 포동 지역에 한하여 인민폐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해 전역에서 하나의 지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해의 인민폐 업무 외자은행의 설립조건을 보면, 중국내 영업기간 3년 이상, 신청 전 최근 2년 동안 연속이익 실현, 신청 전 最近 1년 내 중국내 외화대출금 월 평균 잔액 1.5億달러 이상, 중국내 외화대출금 잔액의 총자산대비 점유비중 50% 이상 등이다. 외자은행, 외국은행의 지점 그리고 합자은행의 인민폐에 관한 영업

25) 汪小亞, 『世紀門檻的中國金融改革』(中國金融出版社, 1999), p. 253.

26) 「上海外資金融機構中外合資金融機構管理辦法」(인민은행, 1990. 9. 8.) 제3-7조.

27) 「上海浦東外資金融機構試點經營人民幣業務暫行管理辦法」 제11조.

범위는 여수신 업무, 담보 국제 및 금융채권의 투자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에서 허가 받은 사항에 한하고 있다. 업무의 대상은 외자기업이나 외국인의 수신과 외자금융기구의 비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인민폐 여신의 재수신에 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와 대출업무는 외자기업이나 외자금융기구의 외환대출을 얻은 비외상투자기업의 인민폐 대출과 담보를 말한다.²⁸⁾

최근 발표한 「심천시 외국금융기관의 인민폐 업무 시범실시에 대한 지침」에는 深圳에 소재한 외국은행이 인민폐 영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내 회계연도기준 3년이상 영업중이고 2년 연속 이익을 내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외국은행지점의 월평균 외화대출 잔액이 1.5億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합자·독자은행 및 재무회사는 월평균 외화대출이 1億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3) 은행업 개방

외자기업의 중국내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지역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 동안 23개 도시에 한하여 외국은행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WTO 가입후 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한적인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은행의 인민폐영업 관련, 중국의 기업을 대상으로는 가입 후 2년 내, 중국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³⁰⁾ 따라서 이번 합의 내용에 따라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4개 은행의 독과점 지위에 대하여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며, 특히 외자은행은 무역의 증가에 따른 국제결제업무와 신용장업무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자은행은 중국 국제무역 결제업무의 40%를 점하고 있다.³¹⁾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한적인 내국민대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야 하므로 「인민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保險業

중국의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금융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가 보험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개혁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중국에는 재산·생명 및 재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中國人民保險會社·中國太平洋保險會社 및 中國平安保險會社 등 30개의 보험회사가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인민보험회사가 100분의 70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보험업의 대외개방 지역을 상해와 광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1999년 말 현재 중국에는 미국·일본·스위스·캐나다·프랑스·독일 등 총 7개의 외국보험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외국보험회사의 사무소는 총 178개에 달하고 있다.³²⁾

28) 현재 上海 浦東地域에 설립되어 있는 외국은행 가운데 일본홍업은행·제일근업은행·시티은행·스탠다드차터드은행·회풍은행·동방회리은행·일본삼화은행·동경미쓰비시은행·上海파리國際銀行(The International Bank of Paris and Shanghai, Standard and Chartered Bank) 등 19개 은행의 상해지점이 인민은행의 승인을 얻어 인민폐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馬洪, 『中國市場發展報告』(中國發展出版社, 1999), p. 87.

29) 汪小亞, 『世紀門檻的中國金融改革』(中國金融出版社, 1999), p. 255.

30) 陳玉明, 『中國加入WTO各行業前景分析』(經濟日報出版社, 2000), p. 332.

31) 상계서, p. 302.

중국에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합자 보험회사나 지점의 자산운용에도 매우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회사채에 대하여서는 투자자산의 10% 그리고 주식에 대하여서는 15%이상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투자자산의 5% 이내로 전체적으로 30%까지만 허용하며, 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 보험회사와 직접 경쟁이 되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100여 개의 외국보험회사가 중국정부에 영업면허를 신청해 두고 있다.³²⁾

보험업과 관련하여서는 가입 후 외국생명보험회사에 대해 50%까지 지분보유를 허용하고 생명보험이외의 보험업에 대해서는 51%까지 투자지분보유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합자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국내보험회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외국보험회사의 인가 요건을 보면 ① 해당 보험업 영업 30년 이상, ② 주중대표사무소 설립후 2년 경과, ③ 본사자산규모 50억달러 이상, ④ 1국 1사 허용, ⑤ 중국의 보험산업에 대한 기여도, ⑥ 해당국 정부의 추천 및 지원 등이 있다. 현재 현지 한국 투자기업이 지불하는 보험료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사업성이 밝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의 단지 「보험법」으로 규제를 가하던 보험시장에 대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과 같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3. 證券業

1984년 베이징의 天橋 백화점이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한 이후로 上海飛樂 음향주식회사와 上海延中 실업회사 등이 순차적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주식·채권의 정식거래는 1990년 12월 상해증권거래소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1991년 7월 深圳에 두 번째 증권거래소가 개설되고 국무원 증권위원회와 중국증권감독회가 조직되면서 제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의 주식시장에는 내국환표시 내국인 거래종목인 A株 947여 개 주 종목과 외화표시 외국인전용 거래항목인 B株 60여 개 주가 통용되고 있다. 1996년 말 현재 중국에는 증권회사 94 개사, 신탁투자회사 244 개사, 그리고 증권거래영업부가 2,419개 설립되어 증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식시장은 증권화율이 매우 낮고, 기관투자자가 양성되지 못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경영상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성장에 따른 자금수요 확대, 주식제 도입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에 따라 주식시장은 그 발전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채권시장에는 국채·국가투자채권·국가투자회사채권·금융채권 및 회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채권이 있지만 채권발행은 국채와 금융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의 유통은 1986년 8월 심양시 신탁투자공사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債券에 대한 場外去來를 취급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회사채의 거래는 매우 극소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국채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증권업과 관련한 WTO 가입조건으로서, 먼저 소수의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중국기업과 합자의 형식으

32) 範煊山, 『中國保險市場』(湖北人民出版社, 1999), pp. 133-135.

33) 상계서, pp. 133~137.

로 기금관리업무가 가능하도록 양허되어졌다. 따라서 설립 시 33%, 3년 후 49%까지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앞으로 중국에서 자유로운 증권발행과 교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⁴⁾

4. 通信 서비스

통신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국책 사업중의 하나로서 외자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분야이다. 금융 서비스 부분과 더불어 통신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중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통신시장의 경우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통신 서비스의 지리적 제한과 관련하여 호출기 및 부가가치 서비스의 제한은 2년 내 폐지,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한은 5년 내 폐지, 국내선 서비스의 제한은 6년 내에 폐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통신분야에 대한 외자출자를 WTO 가입이후 49%까지 인정하며, 부가가치서비스는 향후 2년 이내, 호출기 서비스는 향후 3년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는 향후 외자기업의 중국 통신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미국 측에 약속한 CDMA에 대한 시장개방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의 중국 통신시장 진출에 호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분야가 부가가치 통신 중 이동통신 관련 산업이다. 중국 이동통신 사용자 수는 총 6,300여 만 명으로, 이동통신 사용자 규모와 네트워크 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그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국민에 대한 보급률은 4.7%에 그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이동통신은 GSM 방식으로 CDMA 이동 네트워크로 전환되거나 이에 대한 외국 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2002년 이후 제3세대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외국자본의 대중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자와 합자 휴대폰 기업에 대해 쿼터제도를 실시하여 생산 총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합자를 제외한 휴대폰 생산업체 허가를 중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이 자체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하여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NOKIA, MOTOROLA, ERICSSON 3개사가 현재 중국 휴대폰 시장의 80-85%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SIEMENS, PHILIPS, 한국의 삼성 등이 나머지를 분할하고 있다.³⁵⁾

5. 流通業 開放

1) 도매 유통업과 개방

유통업의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은 1992년부터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허용함으로써 현재 중국에는 18개 소매유통업과 2개 체인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방 단위로 소매 유통업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어 전국적으로 소매 유통 기업이 277개에 달하고 있다. 단 도매업은 北京, 上海, 天津, 重慶 등 4개 직할시에 한해 외국인에 대한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1997

34) 曲大富, 『WTO與第三產業』(人民日報出版社, 2000), p. 122.

35) 상계서, pp. 231~247.

년 중국 정부 지시에 의해 외자기업 소매업 비준을 국무원 비준사항으로 규정하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중국 측 지분 50% 이상, 합자기한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중국 측 이윤 배분 50% 이상, 합작기한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증자와 관련하여서는 필요한 자금을 증자가 아닌 현지 금융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하여 월마트, 까르푸 등 미국과 유럽의 대형 할인점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까르푸는 北京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23개 대형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마트 역시 大連 등 4개 도시에 8개의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중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주요 유통장벽을 WTO 가입 5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임을 양허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번 중·미 합의에서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외상상업기업의 대외무역권한, 애프터서비스, 유지·보수 등에 관한 제한을 WTO 가입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외에도 항공운송 및 화물운송, 저장·창고·물류, 광고, 포장 등 보조적인 유통서비스 분야도 WTO 가입 3-4년 내에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고, 관련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³⁶⁾

2) 대외무역업의 개방

중국정부는 외국자본이 중국내에서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자로 상해의 포동과 심천 경제특구에서 대외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개방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현재 총 4개 회사에 대하여 중국 측 파트너와의 합자를 허가하였는데, 그 중 3개 회사가 대우와 쌍용 그리고 선경이 투자한 기업이고 나머지 한곳은 일본의 미쯔비시가 투자한 기업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영업 범위가 협소하고 허가 조건이 엄격하여 WTO 가입을 위한 제19차 실무회의에서 WTO 사무국은 더 확대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합자무역회사는 중국 측이 반드시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법정대표도 중국측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진입조건으로서 ① 신청 전년도 매출액이 미화 50억달러 이상, ② 신청 전 3년간 대중 평균 무역액이 미화 3000만달러 이상, ③ 신청 전 중국 사무소 설치기간이 3년 이상 혹은 투자총액이 미화 3000만달러 이상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⁷⁾

3) 지역보호주의와 투명성

外商의 중국내 도·소매업 경영참여 관련 법규를 시급히 제정·발표하도록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유통업을 '제한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방정도와 비준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중국은 유통영역의 외자이용에 관한 법규를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에 대한 진입조건·자격표준·투자비율·합영연한·합작형식·비준순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과거 계획경제의 실시가 원인이 되어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동유럽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고도의 집중된 중앙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지방의

36) 劉國光, 『2001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豫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pp. 255~261.

37) 「關於設立中外合資對外貿易公司試點暫行辦法」(1996) 제3조.

경제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의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이 형성될 수는 없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경제 인프라 형성이나 유통망 형성을 하지 못하게 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현재의 중국 경제의 성장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자유로운 통일시장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지방보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들이 해당 지역의 고용과 세수확대를 위하여 지역간 무역을 금지하는 많은 형태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남부의 광둥성은 행정력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해당지역의 생산제품만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공식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19개에 이르는 제품 구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한편에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입 금지조치를 취한 제품 수가 48개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 일부 지역은 해당지역의 소비재 판매기업이 판매하는 상품 중 해당지역 생산 제품이 적어도 30%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기도 하였다. 해당지역의 도소매업자들이 타지역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낮은 대출이자율과 낮은 세율을 해당지역 생산업체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이러한 보호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보호주의는 전국적인 시장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권역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형태로 중국시장이 구성되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³⁸⁾

중국의 WTO 가입 실무회의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것이 대외경제관련 법률의 투명성(transparency) 문제였다. 그 중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입법간의 통일적 적용문제와 지방정부의 중앙입법의 수용에 대한 논의가 핵심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지역 보호주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중대한 행정적 규제로서 WTO 가입과 동시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VI. 結 論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는 건수 면에서는 증가하였지만, 금액 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가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투자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는 지역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山東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텐진과 동북 3성 등 발해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江蘇, 上海 등 지역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그 동안 투자를 제한해 왔던 통신, 유통, 금융 분야 등에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서 그 일정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투자 정책과 시장여건의 변화로 중국내의 투자환경이 급변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對中 투자의 패턴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 개방의 확대는 중국에 대한 진입 기회를 증가시키지만 오히려 경쟁은 심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노동밀집형 직접투자 위주의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업종별, 과도한 지역 편중에서 탈피하여 정보통신, 유통, 인터넷 그리고 금융 등 新산업 분야로, 또한 지역적으로도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투자패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8) 陸學藝, 『中國經濟改革與社會結構調整』(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pp. 109~128.

무엇보다도 그 동안 삼자기업 설립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 투자가 전략적 제휴나 M&A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모되어져야 할 것이다. 전략적 제휴는 신규 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기업간 향후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고, 환율변동에 신속히 대처하여 부품조달이 가능하고, 생산요소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각국의 규제를 적절히 회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 현지에서 유통망을 구축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에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계속적으로 중국 현지에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유통망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기술-판매 제휴를 통하여 효과적인 중국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양질의 기업을 매수하는 M&A형 투자 방법도 고려하여 볼직하다. 현재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소유권 거래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외국기업들의 國有企業 M&A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M&A 사례는 시장 진입장벽의 극복, 중국내 파트너쉽 구축, 새로운 사업발굴 등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중 투자진출 전략으로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馬洪·孫尚清, 『中國發展研究-國務院發展研究中心研究報告選』(中國發展出版社, 1999).
- 馬洪, 『中國市場發展報告』(中國發展出版社, 1999).
- 劉國光·王洛林·李京文, 『2001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豫測(經濟藍皮書)』(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 劉國光·王洛林·李京文, 『1999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豫測(經濟藍皮書)』(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 徐賢權, 『中國與世界貿易組織』(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1996).
- 劉光溪, 『中國與經濟聯合國』(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1998).
- 于維香·何寧·何茂春, 『國際服務貿易與中國服務業』(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1995).
-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編纂委, 『1999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經濟科學出版社, 1999).
- 文貫中, 『中國國有企業改革』(中國經濟出版社, 1996).
- 唐堅, 『中國企業資產重組類型案例』(四川大學出版社, 1998).
- 範煊山, 『中國保險市場』(湖北人民出版社, 1999).
- 汪小亞, 『世紀門檻的中國金融改革』(中國金融出版社, 1999).
- 陳玉明, 『中國加入WTO各行業前景分析』(經濟日報出版社, 2000).
- 戴相龍, 『中國金融改革與發展』(中國金融出版社, 1997).
- 中國對外經濟貿易合作部,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經濟科學出版社, 2000).
- 馬洪, 『中國市場發展報告』(中國發展出版社, 2000, 5).
- US-CHINA BILATERAL MARKET ACCESS AGREEMENT(1999. 11. 15.).
- USITC,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n the United State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Publication 3229)』(Investigation No. 332- 403, Sep. 1999).